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99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김영진 · 이정현 · 이해식
서삼석 · 김교홍 · 김태년
윤후덕 · 조승래 · 허영
박지원 · 최혁진 · 안태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정책심의회는 고용 관련 종합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의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계속 심의하는 방식이 제도 운영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주요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목적과 심의 구조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7조의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를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 6. (생략)</p>	<p>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p> <p>1. ~ 6. (현행과 같음)</p>